

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(기획재정국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1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09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8. 24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8. 24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

가.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	기정액				2회추경(안)	비고
	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1차추경		
계	641,668	590,202	545,733	32,053	12,416	51,466	
일반회계	630,251	576,127	532,501	31,210	12,416	54,124	
특별회계	11,417	14,075	13,232	843	0	-2,658	
의료급여기금	581	504	504		-	77	
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	642	294	294	-	-	348	
주차장	10,194	13,277	12,434	843	-	-3,083	

나. 일반회계

○ 세입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	분	예산액 (A+B)	기 정 액			2회추경(안) (B)	비고	
			소 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		1차추경
계		630,251	576,127	532,501	31,210	12,416	54,124	
자 체 재 원		136,757	139,856	139,856	-	-	-3,099	
	지 방 세	105,061	105,061	105,061	-	-	-	
	세 외 수 입	31,696	34,795	34,795	-	-	-3,099	
의 존 재 원		416,406	402,225	367,634	31,210	3,381	14,181	
	지방교부세	13,158	13,158	12,591	567	-	-	
	조정교부금등	122,107	122,107	116,546	5,561	-	-	
	보 조 금	281,141	266,960	238,497	25,082	3,381	14,181	
보 전 수 입 등		77,088	34,046	25,011	-	9,035	43,042	
	순세계잉여금	62,637	34,046	25,011	-	9,035	28,591	
	보조금사용잔액	14,451	-	-	-	-	14,451	

○ 세출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	분	예산액 (A+B)	기 정 액				2회추경(안) (B)	비고
			소계(A)	당초예산	간주처리	1차추경		
계		630,251	576,127	532,501	31,210	12,416	54,124	
일 반 회 계	정 책 사 업	495,467	461,654	419,218	31,020	11,416	33,813	
	재 무 활 동	23,098	2,459	1,459	-	1,000	20,639	
	행정운영경비	111,686	112,014	111,824	190	-	-328	

4.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

가.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	기정액	2회추경(안)	증감률
총계	198,516,544	187,953,846	10,562,698	5.61 %
민원감사담당관	201,961	201,961	0	0.00 %
기획재정국	31,006,725	20,669,515	10,337,210	50.01 %
기획예산과	23,795,525	13,332,239	10,463,286	78.48 %
홍보디지털과	5,416,632	5,505,818	△89,186	△1.62 %
재무과	404,561	417,982	△13,421	△3.21 %
세무1과	486,012	474,203	11,809	2.49 %
세무2과	636,859	672,199	△35,340	△5.26 %
부동산정보과	267,136	267,074	62	0.02 %
행정문화국	147,968,353	148,118,431	△150,078	△0.10 %
행정지원과	100,464,560	100,532,702	△68,142	△0.07 %
문화체육과	16,132,687	17,627,376	△1,494,689	△8.48 %
마을자치과	13,378,871	12,055,536	1,323,335	10.98 %
교육지원과	17,055,993	16,944,349	111,644	0.66 %
민원여권과	936,242	958,468	△22,226	△2.32 %
보건소	19,339,505	18,963,939	375,566	1.98 %
보건의료과	3,583,276	3,454,882	128,394	3.72 %
건강증진과	15,089,637	14,832,720	256,917	1.73 %
위생과	666,592	676,337	△9,745	△1.44 %

나. 기획재정국 추경 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세 부 사업명	사 업 개 요	최종예산액	기정액	2회추경(안)
1	기 예 산 과	금천구 시설관리 공단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요내용 -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지원 (공공운영비, 국외업무여비, 교육훈련비, 행사홍보비, 위탁관리비, 예비비) ⇒ 주차사업부 통합이전 취소로 사무실 공간개선비 미집행,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연수 미 실시 및 집합교육 축소 등) ⇒ 서버 향온합습기 교체비용 반영 	6,592,254	6,672,881	-80,627
2	기 예 산 과	사업예산 편성 및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요내용 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⇒ 코로나19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워크숍 취소 	49,375	51,475	-2,100
3	기 예 산 과	예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요내용 - 상생국민지원금 구비분담분 확보 	16,086,897	5,525,428	10,561,469
4	홍 디 지 털 과	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운영 및 스마트 역량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요내용 - 스마트도시 역량 강화 및 스마트도시 시설 유지관리 ⇒ 코로나19로 주민 체험공간 추진불가, 시설 유지관리비 소량 발생 	17,540	26,540	-9,000
5	홍 디 지 털 과	정보 시스템 운영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요내용 -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용역 ⇒ 코로나19 지속 및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추진 불가 	0	76,000	-76,000
6	세 무 2 과	조세채권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요내용 - 휴면계좌 압류 및 해제 촉탁수수료 - 부동산공매대행수수료 	27,860	31,280	-3,420

5. 검토의견

가. 추경예산 규모 및 편성방향(총괄)

(1) 추경예산 규모

-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5,902억 217만원 대비, 514억 6,511만원이 증액된 6,416억 6,729만원으로 8.72% 증가하였으며
- 이 중 일반회계가 541억 2,400만원 증액되어 6,302억 5,117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26억 5,890만원이 감액되어 114억 1,611만원임.

(2) 편성방향

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코로나19상생 국민지원금과 취약계층 생활지원비, 소상공인 지원 재난 관리기금 등 코로나19 대응과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음. 추경 재원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축제·행사성 경비, 국내외 여비 등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였음

나.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

-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본 보고서 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정 예산에서 103억 3,7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-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
 - 기획예산과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8,062만원 감액 및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부담금 예비비 105억 6,146만원 증액 등 총 104억 6,328만원 증액
 - 홍보디지털과는 스마트도시역량강화 및 시설 유지관리 900만원 감액,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용역비 7,600만원 감액 등 총 8,918만원 감액
 - 세무2과는 휴면계좌압류 및 해제 촉탁 수수료등 일반운영비 등 총 3,534만원 감액
-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코로나19장기화로 대면이 불가피한 사업들의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기에 감액 편성이 적정하며 또한 정부5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따른 구비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.

붙임 관련 법령 1부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6855호, 2019. 12. 31., 타법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 8. 4.]